



2026학년도 생활인성부 관련 교육현장실습생 대상 주요 안내 사항

가. 학교폭력

- 1) 학교폭력 예방 교육 현실화
 - 학생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기별 2시간 집합교육 의무
- 2) 갈등 발생 초기 개입 및 상담 활동 강화
 - 갈등 인지 시 즉시 담임교사, 전공과 교사 및 학교폭력 전담교사 상담으로 화해와 이해유도
 - 사안 초기 학부모와 연계 지도
 -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힘든 경우 생활인성부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여 협조
- 3) 우리학교 인성교육 브랜드 아래 인성교육 전학급 참여
 - 학급별 학급자치회 주관 인성교육 자료 제작(전학급 참여)
 - 월간 인성교육 내용 진정성 있는 교육 및 직원회의 전달 내용의 정확한 전달

나. 생활지도

- 1) 본교 생활인권규정은 꼭 한번 숙지. 학생지도 시 항상 참고하면서 지도.
- 2)  강압적인 통제보다는 생활지도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알려주고 지도 부탁.
- 3) 생활지도 중 힘든 일이 발생 시 생활인성부에 적극적으로 상담 및 도움 요청.
- 4) 생활지도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 부탁.
- 5)  일관성, 지속성, 공정성이 있는 생활지도 필요.

다.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 문화

- 1) 학생자치회 주도적 전 학생 참여형 소통, 행사, 캠페인 활동 운영에 다양한 의견 제시와 적극적 협조 부탁
- 2) 인성교육 브랜드 및 교육 아이디어 적극적 제시 환영. 학급별 월간 인성교육 주제 작성시 협조

라. 안전한 학교,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

- 1) 효율적인 안전 관련 교육 및 대피 훈련 진행 시 임장지도 협조
- 2) 전교사의 교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안전사고 요인 제거 노력
- 3) 보건교육 내실화, 전문상담교사의 위기학생 상담 및 담임교사, 학부모 연계로 위기 해소

마. 학생, 학부모 상담

- 1) 학생상담 : 1인당 학기당 2회 이상(시기에 맞게, 또는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)
- 2) 학부모상담 : 학부모상담주간(연4회)에 맞춰 내교 한 학부모와 상담 또는 유선 상담 등

바. 학생 지도 관련 주요 규정 내용 안내

- 08:00 교실 기준 지각학생 무단지각 처리(본교 규정에 따른 지각 적용시간 08:00 교실 기준)
- 아침 등교 시 교복 필수(슬리퍼 샌들 금지) <본교 생활인권규정 19조 용의사항 참고>
- 학생 외출 시 질병 외출은 보건선생님 담당
(그 외 개인 용무 외출 시에는 교감선생님 구두보고 후 담임교사가 진행)
- 학업중단 숙려제, 안전공제회, 거동 불편으로 언덕 개인차로 등교 원할 시 안전담당 선생님과 상의
- 위기관리(자해 등) 학생 발생 시 보건선생님과 상의
- 본교 생활인권규정 118조 선도 기준표 상시 참고